
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8. 3. 31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8. 3. 31
- 라. 上程日字 : 1998. 4. 9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春煥)

가. 提案理由

- 재난관리법이 전문개정('97.8.30 법률 제5404호)되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도 전문개정('98.2.24 대통령령 제15662호)이 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, 지역재난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로 규정함(안 제2조)

- 기금관리는 서산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,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함(안 제7조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◎ 본 조례(안)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으로써,
- ◎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
- ◎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.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- ◎ 본 조례(안)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없었음

5. 討 論 : 없었음

6. 少數意見 : 없었음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187호
의결년월일	1998. . . (제 회)

서산시제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 3. 31.

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1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3.31
제 출 자 : 서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◇ 재난관리법이 전문개정('97.8.30, 법률 제5,404호)되고,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('98.2.24. 대통령령 제15,662호)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하여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재난관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로 규정함 (안 제2조).
2. 기금 관리는 서산시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토록 규정함 (안 제4호).
3. 기금의 용도는 영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(안 제5조).
4.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.
5.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함 (안 제7조).

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6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5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기타

제3조(기금운용계획)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관리)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이 기금은 영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.

②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.

제7조(기금의 회계관리) ①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수입·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.

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산보고)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